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박춘선 의원 외 27인
나. 의안번호: 제1562호
다. 발의일자: 2024.2.5.
라. 회부일자: 2024.2.7.

2. 제 안 사 유

- 코로나 이후 서울시가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대규모 행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, 이에 따른 폐기물량도 증가하고 있지만, '1회용품 사용 줄이기'라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이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행사의 규모를 규정하고,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대규모(1,000명 이상) 행사를 개최할 때,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고,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대면 행사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, 현행 조례에는 1회용품 구매·사용 불가 규정¹⁾만 있을 뿐,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 대책 수립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.

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임.

<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제8조(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) ①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,000명 이상인 경우,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</p> <p>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. 행사 물품 재사용·재활용,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.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.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1)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 제6조(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·사용하지 않아야 하고,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.